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안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나. 실태조사 위탁 대상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3)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심의·확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생산 실적이 있거나 관련 인력 및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항만안전 관련 정책 또는 학술연구 실적이 있거나 관련 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3. 항만운송업체 또는 항만운송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심의·확정)</u>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u><신 설></u>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생산 실적이 있거나 관련 인력 및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항만안전 관련 정책 또는 학술연구 실적이 있거나 관련 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u>단체</u> <u>3. 항만운송업체 또는 항만운송</u> <u>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u> <u>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u> <u>관 또는 단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연 락 처	(051) 773 - 5791